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93
----------	------

발의연월일 : 2024. 8. 13.

발의자 : 서지영 · 안상훈 · 조은희
조승환 · 최은석 · 이현승
정성국 · 성일종 · 김대식
곽규택 · 이성권 · 김선교
김용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
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
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
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계
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
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 계
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
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재료 구매계약에 대
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식재료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u></p> <p><u>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등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의 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u></p>